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장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유형에 '통합공공임대주택'을 추가하고 소형주택 관련 용어와 면적 기준을 변경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-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,
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고 정비사업에서 인수하는 '소형 주택'을 '국민주택규모 주택'으로,
 '원룸형 주택'을 '소형 주택'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